

# 제 안 설 명

-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신건택 의원입니다.
-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열여덟(18)명의 동료의원이  
동참해 주신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고  
감사히 생각합니다.
-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비정규직과 취약계층 증가 등 노동시장이 급격히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동환경 변화 속에서 노동정의의 실현과 올바른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서는 근로감독행정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의  
역할이 더욱 막중합니다.

그러나, 이들 근로감독관들은 기존 업무였던 임금체불과 사업장  
감독 외에 불법파견, 하도급 민원, 부당노동행위, 고용평등,  
취약계층 노동인권으로까지 업무가 확대·고도화되면서 근로조건  
및 노동관계법령의 감독과 노사의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다수의 근로현장을 규제하기에 근로감독관의 수가 매우 적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감독관 한 명이 임금노동자 1만2천500명, 사업장 1천450곳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감독관의 실질적인 감독기능이 떨어지고 있고 있습니다.

서울시만도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1만 7천 6백여명에 이르고, 산하 투자·출자·출연기관과 서울시 업무의 수탁기관에 종사하는 노동자만도 수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 행정기관과 산하·유관기관을 대상으로 노동권 침해와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조사하고, 위반내용에 대해 시정권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동조사관'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지방고용노동청의 근로감독 기능을 보완하고 근로보호의 사각지대를 제거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노동이 바로 서야 서울이 보다 평등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노동정의를 국가경제력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 노동권의 보호와 올바른 노동행정서비스를 기대하는 직원들의 염원을 저버리지 마시고, 부디 개정안의 취지에 만장일치로 동의해 주시길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